

보도시점 (지 면) 6. 23.(금) 석간  
(인터넷) 6. 23.(금) 06:0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6.23 ~ '23.8.2)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 ...  
52개 질의·답변 제공

### <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 < 연동제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설명회(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 안내서(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서기관	곽성원 (044-204-7945)
		담당자	사무관	최형선 (044-204-7908)

-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규정**(제14조제1항 신설)
-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사항(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을 제1호부터 제5호에 포함
  -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
- ② **연동 약정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90일/1억원으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 조항 규정
- ③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제27조제3항 신설)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신고사건)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조사·처분하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권한 위임
  - \*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 조사권  
(처분권) 시정권고·명령, 벌점부과, 시정권고·명령 면제 및 벌점 경감 권한
- ④ **연동 관련 위법행위의 벌점 부과기준**(별표3 개정)
- 미연동 합의를 유도·강요하는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의 탈법행위는 3.1점 부과
  - 연동 약정 미기재, 성실협약 의무 위반 등 그 외의 신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 부과
  - \* 시정권고 1.5점, 개선요구시정명령 2.0점, 개선요구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3.1점
  - 연동 실적이 있거나,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최대 2.0점의 벌점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
- ⑤ **연동 관련 탈법행위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개정)
-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 탈법행위의 경우 <sup>1차</sup>3천만원-<sup>2차</sup>4천만원-<sup>3차이상</sup>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는 규정 신설

-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 ①~③ 상세내용은 보도자료 본문 참고

- ④ “단순 구매행위는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연동제 미적용”

일부 기업은 문구류 등 소모성 자재를 MRO(유지·보수·운영) 업체로부터 납품받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해당 거래가 단순 구매행위라면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위탁거래가 아니므로 상생협력법 상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발주자로부터 대금 조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행해야”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다. 따라서 발주자와 위탁기업 간에 대금 조정이 없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